##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68

발의연월일: 2021. 1. 8.

발 의 자 : 임종성 · 양이원영 · 소병훈

김윤덕・김정호・안규백

윤후덕 • 정춘숙 • 김철민

최종윤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산강·섬진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,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.

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 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(안 제21조의3 신설).

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다목, 제5조제1항제6호,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).

###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다목 중 "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0호"를 "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"을 "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"로 한다.

제13조제5항 전단 중"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"를"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"로 한다.

제14조제5항 전단 중"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"를"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"로 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자료의 요청 및 처리) 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·섬진강수 계관리위원회 및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

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
- 4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
- 5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
- 6. 「국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
- ② 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"환경기초시설"이란 다음 각	4		
목의 시설을 말한다.	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0	다. <u>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</u>		
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	<u>호</u>		
라. ~ 바. (생 략)	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	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)	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)		
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	①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시설을 새로 설치(용도변경을			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	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<u>.</u>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의 준	6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		
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	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		
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<u> 지시설</u>		
에 해당하는 시설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7.・8. (생 략)	7.・8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
- 제13조(오염총량초과과징금) ① ~ ④ (생 략)
  -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 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세"는 "오 염총량초과과징금"으로 본다.
  - ⑥ ~ ⑧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 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를 |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세"는 "과 징금"으로 본다.

⑥ (생략)

<신 설>

제13조(오염총	량초과괴	-징금)	1
~ ④ (현행	과 같음)	)	
⑤			
「국세]	기본법」	제47조	의4
⊕ ~ ⑧ (ক্	현행과 길	음)	

제14조(과징금) ① ~ ④ (생 략) 제14조(과징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 (5) --------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
-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자료의 요청 및 처리) 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 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・군 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구 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 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

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 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 기 자료 또는 정보
- 4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 장 자료 또는 정보
- 5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 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
- 6. 「국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 기본법」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
- ② 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 원회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.